#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70

발의연월일: 2023. 6. 23.

발 의 자 : 윤준병 · 윤재갑 · 강득구

김영배 · 양정숙 · 민형배

김성환 · 양경숙 · 전해철

김수흥 · 서영교 · 오영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 ·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 법률 제 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면허"를 "의료기사·안경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이"를 "의료기사나 안경사가"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국가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를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료기사등의"를 "의료기사나 안경사의"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학교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

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보건 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 2.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②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학교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학교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 학교가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

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그학교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 제4조(의료기사・안경사의 면허) 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①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 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 시 헙-----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야 하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 제2조 각 호 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교육법 \_ 제31조제4항, 제32 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 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학교<u>"라 한다)에서</u>---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단서 삭제>.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 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 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 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 2. · 3. (생략)
-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 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 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 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 다.
- 1. 의료기사 · 안경사: 대학등에 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 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 | 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 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 <삭 제>

2.	• 3	. (현형	생과	같음	·)	
4.						
-						
-						
-						
-						
-					- <u>o</u>	료기
7	사나	안경시	<u> </u>			
2	학교	교에서	취	득하i	려는	면허
<u>에</u>	상용	응하는	보.	건의:	료에	관한
<u>학</u>	문을	전공학	한 /	<u> </u>		
<스	} ×	1>				

<삭 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못한 경우
-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신 설>

제4조의2(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u> <u>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u> <u>다.</u>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보건의료정보관 권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 2.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
- ②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u>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u> 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학교에서 보건의료 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학교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경우
- 2. 학교가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경우